#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85

발의연월일: 2020. 9. 28.

발 의 자:정성호·김정호·류호정

박홍근 • 백혜련 • 송기헌

양경숙 • 이은주 • 전혜숙

주철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및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서류 아닌 전자 문서가 보편화되고 이는 행정적인 부분도 예외가 아님. 이에 따라 지 방세의 경우 이미 2011년부터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150원~500 원)를 시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세에 있어서는 전자고지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1인 가구인 경우 또는 생업 종사, 잦은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한 등기우편 고지서 미수령 및 우편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편 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신설로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면서도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안 제104조의8).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의 제목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u>액공제)</u> ① ~ ④ (생 략)	<u>세액공제)</u> ① ~ ④ (현행과 같
	음)
<u> &lt;신 설&gt;</u>	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
	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u>&lt;신 설&gt;</u>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
	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
	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